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관련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일몰 연장 》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50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제2216450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관련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일몰 연장	3

I.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제2216450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31.

다. 회 부 일 : 2026. 2.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전문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을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해당 조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조문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는 조문에 대한 일몰기한

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및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3. 검토의견

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관련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일몰 연장

개정안은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도급 범위에서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원도급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¹⁾의 효력을 3년간 연장(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안: 2029년 12월 31일까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 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u>2026년</u>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u>2029년</u> -----.

개정안은 그 발의 배경과 관련하여 2018.12.31.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된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18년 개정 전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건설업종은 종합공사만을, 전문건설업종은 전문공사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업역을 구분하였는데,²⁾

전문건설사업자는 대부분의 사업물량을 종합건설사업자의 하도급에 의존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저가·일괄 하도급 등의 불법하도급

2)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5991호, 2018.12.18. 일부개정, 2019.6.19. 시행)(2018.12.31. 개정되기 전 법률)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거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4.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종합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등을 통한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하도급 관리 및 입찰 영업에 치중하는 건설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고착화된 바 있음.³⁾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단체 간의 협약⁴⁾을 통해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 건설업종에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동 제도는 2018.12.31. 법률 개정을 거쳐 2021.1.1.부터 시행⁵⁾되었음.

또한, 동 제도의 시행에 있어 법률 개정 시 종합건설사업자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①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한시적(2023년까지)으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 제한,⁶⁾

3)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136호, 2018.12.31. 일부개정, 2021.1.1. 시행) 개정이유, 제364회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18.11.26.) 회의록 참고

4) 참고자료1(p.11.) 참조

5)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136호, 2018.12.31. 일부개정, 2021.1.1. 시행)

6)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136호, 2018.12.31. 일부개정, 2021.1.1. 시행)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② **제16조**·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②1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간 하도급 금지, ③전문 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 허용(2024년부터)이라는 보호장치를 두었음.

【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 ▶ 진출요건: ①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 ②직접시공 원칙
- ▶ 일정: 업계 적응기간 등 고려하여 단계적 개방(공공: '21~, 민간: '22~)
- ▶ 전문건설업체 보호장치
 - ①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 한시 제한(~'23)
 - ②1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간 하도급 금지
 - ③전문건설업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통해 종합공사 수주 허용('24~)*

※자료: 국토교통부

*주-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2027년으로 변경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 한시 제한’은 이후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 등을 사유로 한 전문건설 업계의 보호구간 확대 요청으로, 2021년 4월에는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⁷⁾ 2022년 6월에는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4호, 2021.4.15. 일부개정 및 시행)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④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미만' 전문공사⁸⁾에 대하여 발주자가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개정한 바 있고,⁹⁾

2023년 12월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과 같이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도급 범위에서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원도급을 제외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6.12.31.까지로 하였음.¹⁰⁾

【공사예정금액 기준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연혁】

21년 1월	21년 4월	22년 6월	24년 1월
•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제한 (2023년까지 제한)	•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제한 (2023년까지 제한)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한 고려 가능	•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제한 (2023년까지 제한) • 2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한 가능(2023년까지 유효)	•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제한 (2026년까지)

8) 참고자료2(p.13) 참조

9)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5호, 2022.6.10. 일부개정 및 시행)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④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0)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9865호, 2023.12.29. 일부개정, 2024.1.1. 시행)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동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6.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7.1.1.부터는 종합건설사업자가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전문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는데,

개정안은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안정 및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 보호구간은 한시법적 성격으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종료가 필요하고, 종합건설업체도 대부분 중소기업체로서 보호구간 연장이 영세 종합건설업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바, 2018년 노사정 합의대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며, 나아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건설사업자보다 수주실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보호구간을 현행 4.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유효기간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양 업계가 상반된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고, 유효기간 연장 외에 보호구간 확대 및 유효기간 삭제에 대한 의견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수주 현황과 그에 따른 불균형 정도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 여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적정 금액 및 기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국토교통부는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수주실적 분석 및 제도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¹¹⁾을 진행(2025.11.~2026.7.)하고, 추후 정부·업계

11) 주요 과업내용

가. 건설산업 업종별 수주실적 및 향후 수주전망 분석

- 업종별(종합·전문) 공공·민간 건설공사 수주 실적(건수·금액 등) 분석
-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등)에 따른 건설업계(종합·전문) 영향 분석
- 現 제도 유지 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업종별 수주전망 예측

나. 상호시장 진출 보완방안 검토

- 당초 상호시장 진출 제도의 취지 달성 및 제도효과 등 분석
- 상호시장 완전개방('27.1월부터 4.3억원 이하 전문공사 개방) 및 전문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종합건설업 진출 허용 등의 적정성 검토
 - 적정성 검토에 따라 보호구간 재설정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허용에 대한 제도화 방안 등 검토
- 제도 보완을 위한 이해관계자(발주자·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
- 제도개선 이후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전망 예측

다. 건설산업 발전방안 검토

- 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 관점의 상호시장 진출제도 개선 검토
- 중장기 관점에서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발전방안 모색

·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바,¹²⁾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의 보호구간 및 유효기간 규정 시, 업계 간의 이견 해소를 통해 합의¹³⁾를 도출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91

12) 국토교통부는 2023년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확대 및 일몰연장 시에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국토교통부·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11회 개최 후 합의안을 도출하여 법률을 개정하였다고 설명함.

13) 참고자료2(p.13.), 참고자료3(p.14.) 참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문

노사정은 발주자, 건설기업, 건설근로자 등 산업 참여주체 모두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립된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 6. 28.)」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2018. 7. 25)」에 기초하여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아래와 같이 혁신해 나갈 것에 합의한다.

1. 노사정은 1976년 도입된 이후 건설기업 간 공정경쟁과 산업 생산성의 향상을 저해하는 칸막이식 규제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제한을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하여 종합·전문건설기업 간의 자유로운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한다.
 - ①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기업과 전문건설기업 간의 컨소시엄에 대해 종합공사 도급을 허용하되,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부속된 로드맵에 따라 정부가 도급 절차·방법 등에 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② 종합건설기업이 해당 종합업종에 속하는 시설물을 시공하기 위한 전문공사의 도급을 허용하되,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소액 공사의 종합건설기업 간 하도급을 제한한다.
 - ③ 종합·전문건설기업이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신규 고용과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급받은 공사는 직접 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업역제한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기업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의 순으로 해제하되, 전문건설기업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은 영세 기업 보호, 상호 시공경험 축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허용한다.
2. 노사정은 건설기술의 발전, 공법의 융복합 등 시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설업종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 ①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 낮은 전문성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낮은 업종, 건설수요의 변화로 신설이 필요한 업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단기 업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 ② 건설기업의 시공역량 제고, 중소 건설기업의 육성, 건설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전문건설업 업종 통합 등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방안을 2020년까지 수립한다.
 - ③ 업종개편으로 인한 발주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우량기업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공실적 등에 관해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기업 주력분야 공시제」를 2021년까지 도입한다.

3. 노사정은 건설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고 기술·기능인력 중심의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
- ①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자본금 요건은 건설기업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2020년까지 현행 대비 5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되, 영세 부실업체 난립이나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약화 등 부작용이 없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추진해 나간다.
 - ② 자격등급 중심의 현행 전문인력 보유요건은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통한 기술역량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현장 근무이력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건설업계의 고용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시행에 착수한다.
4. 이 선언문에 담기지 아니한 건설업역, 업종, 등록기준 개편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세부절차 등은 이 선언문에 부속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른다.
5. 정부는 제1항에서 4항에 걸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발의를 국회에 조속히 건의하고 건설 노사는 개정안의 국회의결을 포함한 후속 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6. 아울러 노사정은 향후에도 부실 패이퍼컴퍼니의 퇴출, 직접시공 활성화,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 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 일자리 확충 및 질 개선 등을 통해 건설산업 육성·발전과 건설근로자 등 산업 참여주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해 나간다.

2018. 11. 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진 병 준

대한건설협회
회장

이 주 현

국토교통부
장관

김 현 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건 진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 영 석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위원장

이 봉 남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 보완조치 합의서

정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28.)」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2018.11.7.)」에 기초하여 2021.1.1일부터 시행 중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완조치를 시행할 것을 합의한다.

1. 정부와 협회는 건설산업 혁신을 지속 추진하되, 급격한 시장 재편에 따른 영세업체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
 - ①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3.12.31일까지 공사에정금액 2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공정한 경쟁 여건 아래 상호 시장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 세부기준 개정의 시장 영향을 고려하여 2023.12.31일까지 추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강구한다.
2. 정부는 이상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 아래 건설산업 혁신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2022. 5. 30

국토교통부
장 관

위 희룡

대한건설협회
회 장

김 상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 장

노 석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 장

정 민홍

